

의안번호	2204681
의 퇴 인	이인선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2.
추 계 번호	24F435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해외자원개발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, 공제율 인상 및
공제대상 확대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말에서 2033년 말까지 7년 연장하고, 공제율을 인상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6년 8.1억원, 2034년 21.7억원 등 2026년부터 2034년까지 9년간 총 166.0억원 (연평균 18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4년,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 (안 제104조의15)	-8.1	-6.3	-21.7	-21.7	-21.7	-21.7
	2032	2033	2034	누적	연평균	
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 (안 제104조의15)	-21.7	-21.7	-21.7	-166.0	-18.4	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4조의15(해외 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)	○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, 공제대상 확대 등 － 공제대상: (현행) 광업권 및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→ (개정안) 해외자원의 조사·개발·생산단계에 대한 투자 추가 － 공제율: (현행) 3% → (개정안) 중소기업 10%, 중견기업 7%, 대기업 5%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3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04조의15 (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)	○	○ 해외자원개발투자의 공제대상 확대에 대한 세수효과는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2025년 귀속소득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6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
 -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6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
 - － 단, 현재 동 과세특례의 적용기한(2026.12.31.)을 고려하여,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세수효과는 2028년부터 발생하며, 2026~2027년은 공제율 인상에 대한 세수효과만 발생한다고 가정
-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따른 세수효과는 해외자원개발 투자계획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
 - 과세특례 대부분이 법인세 감면실적에서 발생함에 따라, 재도입에 따른 세수효과는 법인세에서 발생한다고 가정
 - 향후 해외자원개발투자 규모는 해외자원개발협회의 “해외자원개발 용자 5개년 수요조사(2022)”의 2025~2027년 투자계획에 따라 발생한다고 가정
 - － 해외자원개발투자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로, 향후 개발투자 수요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반영하여 추계
 - ※ 단, 수요는 용자수요로,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용자 외의 방법으로 자본을 조달하여 투자할 계획인 경우 조사에 집계되지 않아 실제 투자규모는 수요조사와 다를 수 있음

- 2027년 이후 개발투자 계획은 2027년과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
- 2023년 세법개정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가 재도입된 이후 감면실적이 부재함을 감안하여, 동 과세특례가 시행되던 2011~2013년 해외자원개발 투자액 대비 2012~2014년 감면실적의 연평균 비중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동 제도는 2013년 이후 적용기한 만료로 시행되지 않다가 2023년 세법개정으로 재도입되었으며, 재도입 이후 아직 감면실적에 대한 자료가 부재
 - 해외자원개발투자액의 귀속분이 감면실적으로 발생하는 시차를 감안하여 t년의 투자액과 t+1년의 감면실적을 대비하여 비중을 산정
 - 감면실적이 전년 또는 후년에 비해 1% 수준으로 급감한 2013년의 경우, 특이치로 간주하여 비중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
- 해외자원개발투자의 기업규모별 금액 비중은 2019~2021년간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동 기간 연평균 해외자원개발투자액의 기업규모별 투자비중은 대기업 98.0%, 중견기업 1.3%, 중소기업 0.7% 수준
- 이외에도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조사·개발·생산단계의 사업비 지출 등 투자에 대해서도 공제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합리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함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조사·개발·생산단계의 사업비 지출 등 투자를 구분하여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개요)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·출자를 하는 경우, 해당 투자·출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
-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 광업권·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,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,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을 하는 경우, 해당 투자·

출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

- 해당 감면은 2013년까지 이후 적용기한 만료로 시행되지 않다가 2023년 세법개정으로 재도입
- 공제율: 3%
- 적용기한: 2026.12.31.
- 개정안은 적용기한을 7년 연장하고, 공제율을 기업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인상
 - 공제율: (현행) 3% → (개정안) 중소기업 10%, 중견기업 7%, 그 외 5%
 - 적용기한: (현행) 2016.12.31. → (개정안) 2033.12.31.

□ (감면실적) 동 제도는 2023년 세법개정으로 재도입 이후 아직까지 감면실적이 집계되지 않음

- 단, 재도입 이전 시행시기인 2011~2014년의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 - 과세특례 대부분이 법인세 감면실적에서 발생

[표 2]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실적: 2011~2014년
(단위: 억원)

	2011	2012	2013	2014
계	394	282	5	350
- 소득세	-	0.03	0.01	0.1
- 법인세	394	282	5	350

자료: 기획재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□ (투자액 대비 감면실적 비중 추정) 해당 감면이 시행중이던 2011~2013년의 해외자원개발투자액과 2012~2014년의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액 대비 감면실적의 평균 비중을 추정

- 해외자원개발투자액 대비 감면실적의 연평균 비중: 0.32%
 - 특이치인 2013년 감면실적을 제외하고, 2011~2013년간 해외자원개발투자액 대비 감면실적의 연평균 비중을 계산

[표 3] 해외자원개발투자액 대비 감면실적 비중 산정

(단위: 억원, %)

구분	2012	2014
t-1년도 해외자원개발투자액(A, 억달러)	116	75
t-1년도 평균환율(B, 원/달러)	1,108	1,095
t년도 감면실적(C, 억원)	116	75
비중(C/[A×B], %)	0.22	0.42

주: 2012년 해외자원개발투자액 및 2013년 감면실적은 특이치로 간주하여 제외
 자료: (해외자원개발투자액) 해외자원개발협회 제출자료; (평균환율)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; (감면실적) 조세지출예산서, 각 년도

□ (향후 기업규모별 투자액 추정) 향후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투자계획을 기업규모별 투자액 비중을 반영하여 기업규모별로 구분

-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투자수요는 2024년 6.6억달러에서 2026년 2.2억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
 - － 해외자원개발협회의 “해외자원개발 용자 5개년 수요조사”(2022)에 따르면, 해외자원 개발사업자의 투자는 2023년 7.7억달러에서 2027년 3.1억달러로 감소할 전망

[표 4] 해외자원개발 용자 5개년 수요조사: 2023~2027년

(단위: 억USD)

	2023	2024	2025	2026	2027
용자수요	7.7	6.6	2.8	2.2	3.1

자료: 해외자원개발협회 제출자료

-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2019~2021년간 기업규모별 평균 투자비중을 살펴보면, 대기업(98.0%), 중견기업(1.3%), 중소기업(0.7%) 순

[표 5] 해외자원개발사업자 투자금액의 기업규모별 비중

(단위: %)

	2019	2020	2021	연평균 (2019~2021년)
중소기업	0.6	0.7	0.8	0.7
중견기업	1.7	1.7	0.4	1.3
그 외 기업	97.7	97.6	98.8	98.0

주: 그 외 기업에는 중소 및 중견기업이 아닌 공기업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 등 포함
 자료: 해외자원개발협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향후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투자수요를 2019~2021년간 기업규모별 투자액의 연평균 비중을 바탕으로 구분하여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
 - 단, 2028년 이후는 2027년과 동일한 투자수요를 가정

[표 6] 향후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기업규모별 투자금액 추정치

(단위: 억USD)

	2025	2026	2027	2028 이후
계(A)	2.8	2.2	3.1	3.1
중소기업 (A×0.7%)	0.02	0.02	0.02	0.02
중견기업 (A×1.3%)	0.04	0.03	0.04	0.04
대기업 (A×98.0%)	2.8	2.1	3.0	3.0

□ (향후 세수효과 추정) 향후 기업규모별 투자액 추정치와 투자액 대비 감면실적 비중, 기업규모별 감면 비중 등을 바탕으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에 대한 세수효과 추정

- 향후 기업규모별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투자계획 추정치에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과 적용기한 연장 등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
 - 단,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(2026.12.31.)을 감안하여 2026~2027년은 공제율 인상으로 인한 세수효과만 발생
 - ※ 공제발생 및 징수시점의 시차(1년)에 따라, 현행 특례는 2026년에 발생한 귀속분의 세액공제가 신고되는 2027년까지 적용
 - 환율은 2023년 평균 환율(1,305원/달러)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적용
 - 공제율 조정은 기업규모별로 현행 대비 개정안의 공제율을 비율로 반영
 - ※ 중소기업: 10%/3%. 중견기업: 7%/3%. 그 외: 5%/3%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

구분		2026	2027	2028	2029 이후
t-1년도 해외자원개발투자액 (A, 억달러)	- 중소기업	0.02	0.02	0.02	0.02
	- 중견기업	0.04	0.03	0.04	0.04
	- 대기업	2.75	2.13	3.0	3.0
	계	2.81	2.18	3.06	3.06
환율(B, 원/달러)		1,305			
투자액 대비 감면실적 비중(C, %)		0.32			
t년도 감면실적 추정치 (현행, $D=A \times B \times C$, 억원)		11.8	9.1	-	-
t년도 감면실적 추정치(억원)	- 중소기업 ($A \times B \times C \times 10/3$)	0.3	0.2	0.3	0.3
	- 중견기업 ($A \times B \times C \times 7/3$)	0.4	0.3	0.4	0.4
	- 대기업 ($A \times B \times C \times 5/3$)	19.1	14.8	20.8	20.8
	계(E)	19.9	15.4	21.7	21.7
세수효과 추정치(D-E)		-8.1	-6.3	-21.7	-21.7

(3) 추계결과

-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말에서 2033년 말까지 7년 연장하고, 공제율을 인상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6년 8.1억원, 2034년 21.7억원 등 2026년부터 2034년까지 9년간 총 166.0억원 (연평균 18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4년,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 (안 제104조의15)	-8.1	-6.3	-21.7	-21.7	-21.7	-21.7
	2032	2033	2034	누적	연평균	
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 (안 제104조의15)	-21.7	-21.7	-21.7	-166.0	-18.4	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